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821
----------	-----

2019년 12월 2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 의 자 : 김인호 의원(찬성자 9명)
- 나. 발의일자 : 2019년 8월 06일
- 다. 회부일자 : 2019년 8월 13일
- 라. 상정결과 : 제29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8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9년 12월 17일,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역관광협의회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관광산업 관련 이해관계자가 지역 관광정책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 및 수요자 중심의 협력적 지역관광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시장은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광협의회의 설립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제1항)

- 시장은 협의회와 각종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제3항)
- 협의회와 설립허가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안 제16조의2제4항)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첨부)
-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경욱)

- 동 개정안은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에 따른 서울특별시지역관광협의회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u>제16조의2(서울특별시 관광협의회 설립 등) ①</u> <u>시장은 법 제48조의9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u></p> <p><u>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법 제48조의9제4항에 따른 업무</u> <u>2. 자치구 관광협의회와 상호 협력</u> <u>3. 시의 관광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연계·협력</u> <u>4. 그 밖에 시 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u> <p><u>③ 시장은 협의회와 각종 사업 및 운영 등에</u></p>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협회회의 설립허가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법 제48조의9(지역관광협의회 설립)에서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지역관광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관련 법령

-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지역관광협의회 설립) ①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협의회에는 지역 내 관광진흥을 위한 이해 관련자가 고루 참여하여야 하며,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2.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3.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5.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⑤ 협의회는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회는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⑥ 협의회는 설립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⑦ 협의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지역관광협의회는 관광산업 관련 이해관계자가 지역 관광정책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 및 수요자 중심의 협력적 지역관광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광역·기초 단위 모두 설립이 가능하여 현재 경기, 세종, 인천, 전남, 충남 5곳에서 관광진흥조례에 지역관광협의회 규정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서울의 경우 마포와 종로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

한편 기존 관광사업자 단체로서 시·도 단위의 관광협회가 존재하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시·도 단위가 아닌 기초 단위의 협회는 설립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조례의 제·개정이 없더라도 상위법에 근거하여 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이 가능하나 동 조례의 개정을 통해 명문화함으로써 근거를 견고히 하는 측면에서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지역관광협의회는 기존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지회인 “서울특별시관광협회”의 수행업무와 상당부분 유사하여 혼선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언론에 보도(한국관광신문, ‘지역관광협의회 설립인가 신청 혼선야기’(16.5.6), 여행신문, ‘지역관광협의회 등장가능성에 긴장’(15.7.6.))된 바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가이드라인에서 ‘시·도관광협의회’와 ‘시·도 단위의 관광협회’의 실질적 단일화를 기본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협회와 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하게 하여 ‘따로 또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는 관광 거버넌스 체계강화의 일환으로 “서울관광 중기 발전계획(2019~2023)”에서 민관이 함께하는 서울관광협의회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므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7. 토론요지 : 없음.

8.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인호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821
----------	-----

발의년월일 : 2019년 8월 6일

발 의 자 : 김인호 의원 (1명)

찬 성 자 : 김춘례, 김제리, 문병훈,
노승재, 경만선, 최영주,
황규복, 김호진, 오한아
의원 (9명)

1. 제안이유

-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에 따라 현재 설치되어 있지 않은 서울특별시 지역관광협회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관광산업 관련 이해관계자가 지역 관광정책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 및 수요자 중심의 협력적 지역관광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시장은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광협회의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함.(안 제16조의2제1항)
- 나. 시장은 협회의 각종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있다고 규정함.(안 제16조의2제3항)
- 다. 협회의 설립허가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함.(안 제16조의2제4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관광진흥 조례」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
「전라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서울특별시 관광협의회 설립 등) ① 시장은 법 제48조의9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8조의9제4항에 따른 업무
2. 자치구 관광협의회와 상호 협력
3. 시의 관광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연계·협력
4. 그 밖에 시 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③ 시장은 협의회의 각종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설립허가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16조의2(서울특별시 관광협의회 설립 등) ① 시장은 법 제48조의9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u></p> <p><u>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법 제48조의9제4항에 따른 업무</u> <u>2. 자치구 관광협의회와 상호 협력</u> <u>3. 시의 관광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연계·협력</u> <u>4. 그 밖에 시 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u> <p><u>③ 시장은 협의회의 각종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p> <p><u>④ 협의회의 설립허가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6조의2(서울특별시 관광협의회 설립 등)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동 조례안 제16조의2제3항 ‘각종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비용이 발생하나,
- 동 조례안 제16조의2제4항 ‘설립허가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사항이 정해지지 않아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움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제3조제1항제2호)
-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세부사항이 정해지지 않아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당관 남승우

예산분석팀장 정한섭

분석관(주무관) 박인근

☎ 02-2180-7934

e-mail : yab0217@seoul.go.kr